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6 - 10호

「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3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1. 제안이유

현행 규정상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,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토록 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.

※ 의정활동비 :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비용

2. 주요내용

가.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(안 제5조)

나. 안 제5조 신설에 따른 제5조(준용)을 제6조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(무양동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(전화 : 054-537-7841, 팩스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: www.sangjuCouncil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(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(2)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제5조 (생략)	제6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에 필요한 비용과 보조 활동비로 매월 1,100,000원으로 한다.

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상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(월정수당 지급) ① 상주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은 매월 1,608,330원으로 한다.

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 지급)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여비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1에 따르고, 국외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의견제출

입법예고명	의견이 있는 해당항목	의견내용

□ 의견제출자

○ 주 소 :

○ 성 명 :

(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성명)

○ 연 락 처 :

(연락 가능한 자택, 사무실, 휴대폰)